

의안번호	2203670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5.
추계번호	24A3623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13(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)	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(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)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(제1항) · 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의13(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(안 제12조의13)

-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¹⁾을 설치·운영하는 자

1) 「주차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하

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,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다만, 개정안은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계 대상을 확정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개정안과 유사한 제22대국회의 의원발의안으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용선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0848)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허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3333) 등이 있는데, 동 법률안은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이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음

[표 1] 주차장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관련 의원발의안 현황(제22대국회)

의안	대상 주차장	신·재생에너지 설비 규모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이용선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0848)	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 의 공영주차장	주차장의 50% 이내의 범위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허영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3333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
	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 의 주차장	해당 주차장의 50% 이상의 면적

자료: 국회의안정보시스템

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